

[ ] 발급  
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[ ] 변경발급 신청서  
[ ] 재발급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시              | 처리기한 30일 |
| 신청인  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<br>(외국인은 국적) |          |
|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취득<br>자격증 | 자격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| 자격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격연월일             |          |
| 변경사항     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재발급       | 재발급 신청사유 [ ] 분실 [ ] 훼손 [ ] 기타( )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신청사유      | 사유가 발생한 날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·제5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첨부서류        | 1. 발급 신청의 경우<br>가.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<br>나.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 3.5cm×4.5cm, 이하 같습니다) 1장 | 수수료<br>없 음 |
|             | 2.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<br>가.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)<br>나.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<br>다. 사진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3. 재발급 신청의 경우<br>가.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(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나. 사진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담당자<br>확인사항 |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동의 [ ], 미동의 [ ]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1. 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,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, 변경, 재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동의 [ ], 미동의 [ ]

2. 위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동의 [ ], 미동의 [ ]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1. 신청인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,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- [예] ○○도 ○○시(군) ○○동(면) ○○로 ○○(△△△△△)
- \* 시·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.(서울특별시→서울, 충청북도→충북)
2. “취득 자격증”란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작성합니다. “자격종목”에는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(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합니다)의 자격증 명칭을 작성하고, 자격번호 및 합격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.
- \* 예시) 자격종목 : 유기농업기능사 / 자격번호 : 00-000000(기재방식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름) / 합격연월일 : 2000.01.01
3. "변경사항"란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